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46
----------	--------

제출일자 : 1999. 8. 1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기준적용상 제정취지를 벗어나 운용되거나, 민원발생부작용등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해 전면 개정함.

주요골자

-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은 매년 1회이상,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함 (제8조)
- 공공하수도 처리 및 배수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함.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미 설치된 지역은 관거유지관리비만 사용료로 징수 토록 규정함. (제10조)
-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행대비 30%인상하고, 상수도 사용료징수 업종체계로 통일함 (제10조 별표2, 별표3)
-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의한 “량”을 담당공무원의 실배출량 확인에의한 “량”으로 인정토록 개정 하므로써 실배출량에 의한 사용료 징수토록 함. (제11조)
- 1일 일정량(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계측기를 설치토록 함.
 - 설치후 봉인하고 계측기의 설치장소 및 관리방법을 정함 (제12조)
- 계측기의 고장시 사용료 인정부과 방법을 정함 (제1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산정기준 징수시기등을 구체화함.(제15조,별표4)
- 사용료 납입의무 승계를 폐지함. (제20조)
- 과태료 처분기준은 하수도법을 준용하고 조례에서는 삭제

개정근거

- 지방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 : 98. 2. 17(행정자치부)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 3 조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

제 4 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 조의 2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사용할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거창군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사용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업종별하수도사용요율표에 의하고 업종구분은 별표3의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2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신고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 12 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

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 14 조 (점용료) ① 군수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의 원인자부담금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논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거창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의 인허가 및 신고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납부는 시설물의 예정준공일자를 기준으로하며 실준공일자에 따라 연기또는 단축할수 있다

제 16 조 (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17 조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8 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 20 조 (권리·의무) 본 조례에 의한 권리 의무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1 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4조의 2 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거창군 읍·면 리 번지(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환경부 고시 제97-85('97.9.1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	보완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인)		성명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2]

업종별 하수도 사용요율표 (제10조 제2항 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 용 량 (톤)	톤당단가(원)	
가 정 용		0 ~ 10	57	
		11 ~ 20	67	
		21 ~ 30	77	
		31 ~ 40	87	
		41 ~ 50	98	
		51이상	108	
업 무 용		0 ~ 20	65	
		21 ~ 50	82	
		51 ~ 100	100	
		101 ~ 300	120	
		301이상	140	
영 업 용		0 ~ 30	100	
		31 ~ 50	118	
		51 ~ 100	136	
		101 ~ 500	154	
		501이상	172	
욕 탕	1 종	0 ~ 200	80	
		201 ~ 300	94	
		301 ~ 500	108	
		501이상	123	
	2 종	0 ~ 200	141	
		201 ~ 300	166	
		301 ~ 500	191	
		501이상	217	
산 업 용		1톤당	60	
침 출 수 등		수질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을 적용		

주)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3]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제10조 제2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소화전,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선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포함) ◦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공설소화전 ◦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급수탑에 의한 급수 (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 보관업포함), 음식점, 학원(도서실포함, 피아노 개인지도제외) ◦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포함) ◦ 병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제외), 화훼, 식목업, 오피스텔 ◦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

업종별	구분내용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 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제소, 목재소(목공소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사제품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적용,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거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효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욕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 (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p>주) 1.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p> <p>2.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등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수도업종을 적용 한다.</p> <p>3.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p>		

[별표 4]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0조 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농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에서 뺀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에 의해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시간당폐수출량(m³)]×1/1000×kg단가×1일조업시간×30일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5]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 (제14조 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6]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제15조 제2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 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 처리장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 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 상승율}}{100} \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 완료이후 경과 년수